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임신중절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임신중절 이야기

2012년 10월 발행

만든이 : 한국여성단체연합 낙태TFT

글 : 고경심, 권미혁, 백수민, 이한본, 정진주

교정·편집 : 김수진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전 화 : (02)313-1632

팩 스 : (02)313-1649

이 메 일 : kwau@women21.or.kr

홈페이지 :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임신중절 이야기



Contents

- 2 책을 내며 – 임신중절, 불편한 진실
- 5 문제의 시작 – 결국 모두의 행복을 위해
- 8 사례 – 그녀들의 이야기 1
- 10 안전한 임신중절
- 12 그녀들의 이야기 2
- 15 유럽의 임신중절
- 18 그녀들의 이야기 3
- 22 모자보건법 개정
- 28 Q&A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이 책은 '낙태'(落胎)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성연합 임신중절 TFT 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태아를 떨어뜨린다, 혹은 지운다는 의미”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낙태'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임신중절'이라는 중립적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용어 등의 고유 명사, 사례에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은 살려두기로 한다.

임신중절, 불편한 진실

세상에는 ‘공개된 비밀’이 여럿 있다. 그 중 하나가 임신중절이다. 임신중절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지내왔다. 그러다 비밀의 봉인이 풀린 것은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는 명백한 불법, 그러므로 낙태는 하지 말라”는 주장을 한 이후였다.

여성의 몸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감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던 임신중절. 경제적인 이유로,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피임법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불법인지도 모르고 일상화되어 온 임신중절. 때론 불가피하였던 임신중절의 문제는 단순히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명권의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많은 사람, 특히 여성에게 커다란 폭력이 된다. 임신중절에는 그만큼 짊어보아야 할 많은 이야기와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많은 이야기의 실마리를 꺼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임신중절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고통, 임신중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외국의

사례, 누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웠던 내용을 담은 [Q & A] 등이 담겨있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수준에서 임신중절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타협선이며 그 핵심은 ‘경제적 사유’를 임신중절 허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형법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내린 결정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범위를 넓힌다면....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낙태죄 형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 중 4명의 헌법재판관은 “임신초기(12주까지).... 낙태로 인한 합병증이나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줄 여지가 큰 데도,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임신 초기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동안 임신중절과 관련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임신중절 금지는 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 않고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비밀리에 행해지는 임신중절로 이어지며, 이는 여성에게 더 많은 정신적 외상을 일으켜 위험하다”(이 책

1)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부의 촉탁을 받아 임신 6주 된 태아를 낙태한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조산사가 2010년 10월, 형법 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의 13쪽)는 유럽심의회 결의문을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이 작은 책은 2011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의 임신중절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여성의 현실과 임신중절을 둘러싼 각종 담론에 대한 검토, 안전한 낙태를 포함해 여성건강의 관점에서도 임신중절을 조망했다. 논의는 시종일관 격렬했고 많은 논점들을 토론했다. 이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복잡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고자 했기에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은 이 책을 읽은 독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결국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임신중절 : 출산 조절의 도구

형법상 낙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습니다. 형법에는 아무런 사유를 묻지 않고 모든 임신중절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960, 70년대, 정부는 인구가 너무 많다며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했고, 당시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앞장서서 임신중절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보건소나 병원이 먼 지역에는 보건소 차량이 찾아가서 임신중절 수술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형법상 낙태죄가 존재하고,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도 강간, 친족성폭력, 심각한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엄격히 금지되어있으나, 사실상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사문화 시켰던 것입니다.

고통의 시작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낙태방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3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임신중절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3곳을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6월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정부의 묵인 하에, 법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여성들에게 이 시기는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중절 시술을 꺼렸고, 시술비는 최고 1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성상담기관에는 시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한 상담이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전년 대비 10배 넘는 임신중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와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산술적 인구수 증가를 위해 아무런 대안 없이 임신중절 근절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극히 제한적인 예외사유만 정해 놓아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든, 고소하지 않은 강간으로 인하여 임신을 했든, 경제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든, 성관계 중에 계획 없는 임신을 했든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을 때 파생되는 많은 부작용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만이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우리, 행복할 권리

임신중절의 문제는 임신한 여성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본인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임신중절의 문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의 권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연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법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 1.

사는 게.. 참, 힘들다.

임신을 하게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는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처음엔 첫 아이가 시설에서 양육될 수 있을 때까지만 키울 생각이었는데, 둘째를 갖게 되자 그 시간이 길어졌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들 때까지, 내 삶은 없다. 출근하는 남편 밥을 차리고, 곧 깨는 아이 젖을 물린 후, 빨래를 돌려놓고 청소를 하며, 아이랑 놀아주다, 다시 빨래를 널고 기저귀를 갈고 또 밥을 먹이고, 재우고 또 밥을 먹이고....

이제는 나도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남편과 대화조차 제대로 못한다. 잠자리도 거의 안하고 있다. 남편의 귀가는 점점 늦어졌다. 일찍 와서, 애들 키우는 것 좀 도와라고 하면, 애가 둘인데, 더 일해야 애 분유 값이라도 벌여오지 않겠냐고 오히려 화를 낸다. 그런데 아닌 게 아

니라, 기저귀 값 이유식 값 대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다. 애가 둘인데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다.

이런 애기들로 어제 저녁에도 한바탕 싸움을 했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해 새벽에 들어왔고, 잠자리를 갖게 되었다.

생리에정일이 지나고 불현듯, 임신했을 때의 몸 상태가 느껴졌다. 병원에 가보니 3주라고 한다. 첫째 때의 기쁨도, 둘째 때의 익숙함도 아닌, 걱정이 먼저 들었다. 18평 빌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좁은데.. 체력적으로 한 명을 더 키울 수도 없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인데..

남편 역시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정관수술을 진작 했어야했다는 등, 배란일도 모르냐는 등 짜증을 내더니, 세 명을 키울 형편이 안 되지 않냐며 지우자고 한다.

나 역시 세 명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난색을 표하며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술을 하셨지 않냐고 물으니 단속이 심해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 둘을 데리고 근처 몇 군데 병원을 더 돌았다. 원래 30-4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겨우 시술을 한다는 곳에서 120만 원 이상을 얘기했다. 그렇다고 낳을 수도 없고, 당장 100만 원 이상이 어디서 나지도 않고... 보험도 안 되고...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안전한 임신중절

“원하지 않는 임신은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건강위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가족계획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더 나은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 회의’ 선언 중, 1987

헌법에 따르면 태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성은 태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무이한 주체이기에,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태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재생산권을 통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주장합니다.

재생산권은 “모든 커플과 개인들이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자유롭게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을 누릴 권리”입니다. 재생산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남성, 여성, 커플, 불임 등)에 적용되는 권리이기에, 남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재생산의 세 가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의 자유권(freedom to choose) : 출산에 있어 수, 터울조절, 출산 시기 및 여부 선택의 자유
2. 접근권(right to access) :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생산 서비스 및 정보에 접근할 권리
3. 통제권(right to control) : 재생산과 성의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와 신체적 통합성²⁾을 확보할 권리

그 동안 여성의 건강권은 무시되어왔습니다.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 8주 내에 합법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안전한 임신중절은 가능합니다. 또 이러한 안전한 임신중절을 통해, 유산과 불임 등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법화가 되면 자료수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추적조사, 병원 감사 등을 통해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한 임신중절은 재생산의 권리이며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삶의 전체적 비전을 보며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리입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안전한 임신중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신체적 통합성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고, 또 하나는 신체의 보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작용에 동의할 권리입니다. Eileen L. McDonagh, “My Body, My Consent: Secur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Funding”, 62 Alb. L. Rev. 1999, p.1061

그녀들의 이야기 2.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등학생이 돼서 만난 2살 위의 남친(남자친구)은 자꾸만 같이 자자고 한다. 수능보기 전 소원이라고, 수능을 더 잘 볼 것 같다고 자꾸만 조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남친이 좋다. 사실 같이 잘 생각도 있는데, 좀 더 큰 마음에 하고 싶었다.

개천절 연휴에 남친집에서 놀기로 했다.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니 DVD도 보고 게임도 맘껏 하자고 했다.

개천절 당일 남친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놀러 갔다. 단 둘이 있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둘만 있을 생각을 하니 떨리면서도 좋았다. 점심은 피자를 시켜먹었다. 그리고 소화도 시킬 겸 게임을 하며 놀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 둘이 있다는 어색함이 사라져갔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고 남친이 키스를 했다. 엄청 떨렸는데 남친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키스

를 하는 도중 남친은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그러곤 점점 진한 스킨십을 했고 결국 우리는 같이 자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친밀해졌다. 우리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게다가 남친은 그 날 진짜 좋았다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얘기했다. 사실 나는 그렇게 좋은지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겠다. 오히려 뭔가 아픈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피임을 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남친이 콘돔을 껴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보기도 웬지 창피했다. 그 이후 몇 번 더 남친의 요구로 잠자리를 하게 됐다.

원래 생리주기가 규칙적이지 않아 한동안 생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의 세 달이 돼도 생리를 하지 않자 조금씩 불안해졌다. 하지만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만 잠이 오고, 밥맛이 좋고 살이 췌다. 너무 불안해서 웹서핑을 하며 임신에 대해서 알아봤다. 가슴이 커지고(내 가슴을 보니 커진 것 같다), 식욕이 좋고, 잠이 오고, 현기증을 느끼며(요새 빈혈 같은 게 생긴 것 같다)....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 약국에 가서 벌써 세 번째 소화제만 사서 나왔다. 테스트기를 사야하는데, 약사 아줌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고, 또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할지 막막하고...

오빠한테 좀 사다달라고 부탁해볼까.. 하지만 오빠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



유럽의 임신중절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도 유럽 국가 중 70%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 영국에서 임신중절은 1967년에 만들어진 ‘임신중절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여성과 태아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위협이 있거나, 여성의 사회경제 요인으로 인한 필요성이 제기될 때 임신 24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의사의 치료가 해당 여성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동의할 만큼 성숙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이 가능합니다. ● 임신중절의 절차 : 의사 2인이 동의하면 가능.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여성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절이 전면 허용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낮은 임신중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임신중절은 등록된 병원과 의원에서 시행되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불됩니다. 임신중절은 13주까지 시행되지만 임신부가 임신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24주까지 허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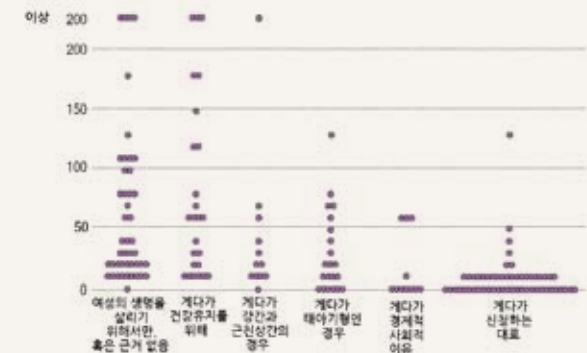
네덜란드	13주 이후에 시행되는 임신중절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정부가 정한 특별한 기준을 충족시켜 승인을 받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신중절의 절차 : 임신중절을 위해 상담 진행. 상담 후 5일간의 대기기간을 통해 임신중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수술 대기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숙려기간은 크게 임신중절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유럽연합의 입장 : 모든 여성을 위한 '안전한 낙태'	2002년 유럽연합의회(EU Parliament)는 앤 반 리포트(Anne van Lancker-report)라고 불리는 결의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국가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불법적 임신중절을 시행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 2008년 4월 유럽심의회는 유럽의 47개 회원국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권을 부여하기 위한 결의문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결의문은 '임신중절 금지'는 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임신중절 금지는 대부분 비밀리에 행해지는 임신중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여성에게 더 많은 정신적 외상을 일으켜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위 유럽의 사례들은 임신중절 금지와 임신중절을 감소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임신중절이 전면 허용되면서도 가장 낮은 임신중절률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로, 인구 억제제를 위해 피임교육을 실시하고 피임약 및 피임도구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익명으로 피임서비스를 제공하며 10대에게도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피임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둘째로, 피임을 포함한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예방책으로 성과 피임에 대하여 청소년과 대중 대상 교육 및 미디어의

캠페인을 활발히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신중절 금지가 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닙니다. 임신중절 금지는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심하게 훼손하는 역기능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한 성생활과 준비된 출산, 즉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점은 하나의 국가를 나타낸다

〈그림 1〉 100,000명당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사망자와 낙태법적근거에 대한 국가분포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2008), The world health report, 2008 - primary health care: now more than ever.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결론적으로, 여성들이 임신에 대해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빠른 주수에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수술이 아닌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술비용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들의 이야기 3.

다시,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다.

#1

오랜 연인과 헤어진 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다.
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준 그와 정말 잘 해보고 싶었다.

만남이 거듭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잠자리를 하게 됐다. 나도 그도 임신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피임에 신경을 많이 썼다. 물론 몇 번 콘돔이 떨어지거나 배란일이 아닐 때 질외사정과 같은 다른 피임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불안했지만,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임신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마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겼다.

그러나 그 때마다 불안했던 건 사실이다. 행여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하나... 생리를 하기 전까지 마음 졸이며, 그러다 생리를 하면 안심하는 패턴이 반복됐

던 것 같다.

며칠 전, 생리예정일이 지났다. 가끔 신경 쓸 일이 생기면 때를 지나서 하기도 했으니까 생각하고 넘겼는데 어쩐지 잦은 현기증을 느꼈다. 부쩍 피로도 많이 느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결국 약국을 찾아 테스트기를 샀다. 소변을 보고 테스트기에 선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동안, 많은 생각이 스쳤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도 없고 아직 아이를 양육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되는데.. 여행도 더 다니고 좀 더 내 시간을 갖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아이도 결혼도 원치 않는데.. 이건 진짜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머리가 복잡해 터질 것 같을 즈음, 테스트기에 그어진 두 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 생각 없이 한동안을 화장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자친구의 반응을 상상해봤다. 분명 싫어할텐데, 어떻게 하지. 아이를 낳아야 하나. 일찍 낙태를 하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빨리 낙태를 해야 할까. 그래도 무서운데... 어떻게 하지..

눈물은 왜 또 자꾸 나는 거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 혼자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할까 짜증이 나는데, 여전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소리가 나질 않았다. 한참을 수화기에서 들려오

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안 들려?”란 말을 듣다, 안에 있는 설움을 안간힘을 내 뱉었다. “나 임신했어.”

그는 말이 없었다.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얼마 후, 집으로 그가 왔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도 나도 준비가 안됐다고. 나를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고 싶진 않다고 했다.

수술...이란 거.. 무섭지만.. 나 역시 이렇게 준비 없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울 능력도 없었다. 낙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

낙태를 결정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병원에 가면 해주는지, 불법은 아닌지, 또 다른 걱정이 태산처럼 쌓였다. 빨리 해야 안전하다는데... 어떻게 하지...

우선 인터넷을 켜고 ‘낙태’라는 두 글자를 쳐 넣었다. 낙태 하는 방법에 대한 글.. 낙태가 모두 불법이라는 글 등이 보였다. 일찍 낙태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모두 불법이라니... 게다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입장 때문에 시술하는 병원 또한 예전처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게다가 찾더라도 비용이 많이 올라서 돈이 많이 든다는 글들도 보였다.

적금을 깨야하나, 남자친구가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주머니 사

정도 뻔하다. 아니, 그보다 병원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눈앞이 깜깜했다. 게다가 병원을 찾더라도 누가 고발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범죄자가 되는 걸까.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머릿속을 떠도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자꾸 눈물만... 난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 없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다.



모자보건법 개정

1.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1) 사문화 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개정이 여성의 임신중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자보건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선 모자보건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5년 실시된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에서 시행된 임신중절 건수 342,233건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합법적 시술은 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자체에도 암수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닐 것이며, 2005년 실태조사 이외에는 제대로 된 조사자료 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임신중절죄에 대한 기소현황도 2006년 10건 기소, 2007년 7건 기소, 2008년 9건 기소에 그쳤으며, 대부분 배우자나 배우자 측 친족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사건화 되

지 않는 점에서 임신중절죄의 사문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 현행 모자보건법의 한계

현행 형법은 모든 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을 하면, 형법은 이유를 묻지 않고 임부를 처벌하고 있으며, 시술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규정으로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이 있는데, 이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동의한 배우자는 처벌받지도 않는 형태의 규정을 하고 있어 여성만 처벌하는 불평등의 문제점을 가집니다.

임부가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산 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부로 하여금 정상적인 양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태아의 부(父) 역시 윤리적, 법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법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배우자나 태아의 부가 임신중절에 동의하였다면 임부와 함께 처벌받는 것이 양성평등한 임신중절죄의 규정방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임신중절죄가 배우자나 태아의 부를 전혀 처벌하지 않는 점과 임신중절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 재생산권, 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모자보건법에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이 임신중절 사유를 임신 주수에 따라 구분하되, **경제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임신중절의 법적 허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임신중절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임부가 전문의의 상담을 거쳐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사유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명확하기 때문에 임신중절에 대한 허용한계가 줄어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3) UN 권고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1. 7. 29.자 최종권고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형법을 삭제하는 방향을 권고한 바 있기 때문에 권고의 취지에 따르기 위해서도 모자보건법은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위원회 일반 권고 24호(1999)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 주요 내용

· 주요 추가·수정 내용

-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모가 임신중절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한 없이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개정안 제 14조 제 1항 신설)
-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모가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의 양육이 산모의 경제력을 현저히 악화시켜 정상적인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경제적 사유)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을 거쳐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개정안 제 14조 제 2항 신설)
- 태아 기형이 다발성 또는 심각한 기형으로 태아와 모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개정안 제 14조의 제 3항 제 5호 신설)

· 삭제 내용

- 기존 모자보건법 상의 허용한계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삭제한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 배우자의 동의 규정을 삭제한다.

3. 우리의 개정안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임신 12주 이내인 경우 의사는 임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한 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 ② 임신 24주 이내이면서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의 양육이 임부의 경제력을 현저히 악화시켜 정상적인 임신 유지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임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한 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 12주를 초과하였더라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임부의 명시적인 동의(임부가 명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친족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태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3.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태아 기형이 다발성 또는 심각한 기형으로 태아와 모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참조 : 현행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임신중절 이야기



1. 수술 전/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 전에는 보통 2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오셔야 정맥 마취 시 음식물이 역류되어 질식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보통 3-5일정도 염증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먹어야 합니다. 보통 2-3일 간격으로 수술한 병원에 가서 수술의사로부터 소독과 확인이 필요하고, 만 7일이 되면 자궁강 내 상태가 깨끗하고 출혈이 있는지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신중절하면 다음에 임신하기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임신 8주 이내에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무균 소독된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는 다음 임신에 악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신 주수가 증가하거나, 수술의 미숙이나 부작용이 있거나, 수술 후 감염이 되어 자궁내막 손상으로 자궁유착이 오거나 나팔관 염증으로 나팔관이 막힐 경우 불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3. 수술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자연 유산인 경우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할 경우는 의료보험 수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인공 유산, 즉 임신중절에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수가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4. 수술은 많이 아프가요?

수술할 때 일반적으로 정맥 마취를 하고 하므로, 수술 도중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나고 회복 시기에 마취가 깨면 생리통과 비슷한 통증이 하복부에 느껴집니다. 보통 당일까지 통증을 느끼며, 사후 1-2주간 간헐적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5. 수술하고 바로 학교/직장에 갈 수 있나요?

수술할 때 일반적으로 정맥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가 깨는데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신이 어지럽지 않게 되면 본인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 시간 동안 하복부 통증과 어지러움, 두통을 느끼므로, 학교나 직장에 가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6. 안전한 임신중절은 몇 주 안에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수술을 할 경우 임신 8주 이내의 경우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신 8주가 넘어가면 증가된 임신 주수에 비례하여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7. 임신중절은 불법인가요? 불법으로 시술한 의사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모든 임신중절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임신중절을 의뢰한 임부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가 함께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8. 여자와 남자가 같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합법 아닌가요?

모든 임신중절은 형법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부와 태아의 친부가 함께 병원을 가거나 태아의 친부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받아도 여성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상 극히 예외적인 허용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하면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9. 인터넷에 보면 임신중절과 관련한 질문이 많이 있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답변한 내용도 많은데 그럼 모두 처벌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산모와 배우자에게 유전적인 질병, 전염병이 있거나, 산모와 배우자가 8촌 이내의 친척인 경우, 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산모가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가능하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불법이어서 적발되면 처벌됩니다.

10. 시술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모든 병의원의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적어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에 대한 기록은 의무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법 상 환자의 개인정보는 본인 이외에, 또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합법적인 시술의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료보험공단 기록에 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본인 이외에는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1. 성교육 비디오를 봤는데, 정말 그렇게 잔인한 건가요?

성교육 비디오에서 태아의 몸과 손발이 움직이고 손가락까지 다 보이고 하는 것은, 아마 임신 주수가 최소한 20주 이상의 태아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과도하게 연출을 하여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신경학적 발달과정이나 통증을 느끼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5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